

대전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3가단22910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

담당변호사 김태범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변 론 종 결 2023. 11. 9.

판 결 선 고 2023. 12. 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4. 30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작성일자 2020. 9. 18.자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(이하 ‘이 사건 차용증’이라고 한다)이 작성되었다. 이 사건 차용증 하단의 채무자란에는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‘피고 회사’라고 한다)의 인감이,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.

채무자 : D 주식회사1) 대표이사 피고 C2) 연대보증인 : 피고 C

차용금액 : 15억 원

위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1. 이자는 년 12%로 정하고 매월 18일자에 지급한다.
2. 원금의 변제는 2021. 1. 31.까지 한다.
3. 이자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할 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.
5.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건 채무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

2020. 9. 18.

채권자 : 원고

채무자 : 피고 회사

연대보증인 : 피고 C

나. 그 후 원고는 2021. 1. 12. 피고 회사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, 채무자 피고 회사, 근저당권자 원고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쳤다가 2021. 4. 29. 피고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

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보건대,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,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,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, 그와 같은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,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, 즉 날인행위가 작성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(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3다30129, 30136 판결, 2003. 2. 11. 선고 2002다59344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감 및 피고 C의 도장이 피고들의 것임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,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,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행위가 피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(명시적 일부 청구)

1)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(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).

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,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,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인 2021. 1. 11.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법무사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였고, 이 사건 차용증의

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 위해 같은 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(같은 날 작성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고 C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),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 1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우선 1억 원을 변제받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피고 회사의 차용사실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원금 15억 원 중 미지급 원금 1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1. 4. 30.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그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3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4. 30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 보건대,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‘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,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’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,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는 대표자인 피고 C 1인만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와 같이 1인 이사의 회사에서는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그 1인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데,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1인 이사인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, 이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성실

1) 2021. 4 .20. 피고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됨

2)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자 당시 및 기초사실 제1의 나항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회사의

대표이사로 2021. 4. 20.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